

2026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함.

■ '19. 9.27.이후 예비 입주자 모집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금번 모집 시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회 모집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선정 예비입주자(현재 입주대기자)의 후순번으로** 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단지 및 세대

□ LH : 10개단지 1,270세대

단지명	공급 면적 (㎡)	전용 면적 (㎡)	세대수 (세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현)입주 대기자	모집 세대	난방 유형	비고(주소 등)
월성2	45.26	31.32	596	3,263	64,920	0	100	지역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3	39.87	26.37	1,333	2,747	54,660	80	100	지역	달서구 학산로7길 39
	45.26	31.32	149	3,263	64,920	4	30		
본동	39.87	26.37	936	2,747	54,660	0	100	중앙	달서구 송현로 113
	45.26	31.32	298	3,263	64,920	19	30		달서구 송현로 113
성서1	39.75	26.37	1,043	2,747	54,660	26	150	지역	달서구 신당로 56
	45.17	31.32	298	3,263	64,920	22	50		
성서3	39.75	26.37	537	2,747	54,660	24	60	지역	달서구 신당로 55
	45.17	31.32	298	3,263	64,920	5	40		
산격	39.87	26.37	1,623	2,747	54,660	116	100	중앙	북구 연암로 183
	43.92	31.32	239	3,263	64,920	26	40		
황금3	39.1	26.37	829	2,747	54,660	0	120	중앙	수성구 청수로45길 41
	45.34	31.32	149	3,263	64,920	0	30		
안심1	39.82	26.34	624	2,744	54,600	60	120	개별	동구 안심로22길 3
	44.38	30.48	240	3,176	63,180	0	100		
안심3	44.38	30.48	360	3,146	62,590	12	80	개별	동구 율하동로 76
옥포2	39.56	26.69	140	2,764	55,110	0	20	개별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51

□ 대구도시개발공사 : 5개단지 622세대

단지명	공급면적 (m ²)	전용면적 (m ²)	세대수 (세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현)입주 대기자	모집세대	난방유형	비고(주소 등)
지산5	38.84	26.16	746	1,959	43,500	0	70	개별	수성구 용학로 325
	46.86	31.56	162	2,365	52,500	0	18		
	62.36	42	168	3,116	68,600	0	13		
범물용지	41.11	26.09	1,975	2,052	44,900	0	149		수성구 범안로 81
	50.3	31.92	236	2,511	54,800	0	17		
	62.98	39.96	435	3,144	68,700	0	22		
상인비둘기	38.9	25.08	2,224	2,062	43,600	0	245		달서구 상화로 371
	48.33	31.16	360	2,565	54,200	0	26		
	61.78	39.83	240	3,268	69,500	0	25		
남산까치	47.76	33.06	150	2,600	56,800	0	17		중구 남산로7길 80
신암강남	37.99	26.41	52	2,078	45,300	0	10	동구 신성로 60	
	45.44	31.59	52	2,484	54,300	0	10		

※ 본 모집은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정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 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시기, 신청자격, 입주평형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람.**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함.**

2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신청접수기간	신청접수장소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계약안내
2026. 2. 2.(월) ~ 2. 13.(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 5. 8.(금) 이후 ※ 신청가구에 대한 자산·소득 조회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니 신청 후 발표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연락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 불가.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불가.

□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6. 1. 19)**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상)이어야 함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로 신청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의 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fcc;"> <th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외국인 배우자</td> <td>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태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함.(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함.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함.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함.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입주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1. 순위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 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입주자격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다목, 마목,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및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관리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가구의 1.5퍼센트 이하(공급면적 40㎡ 이상 주택은 지구별 선정가구의 10퍼센트 이하),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전체 가구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 우선공급 시 1인 가구는 공급면적 40㎡이하로 한정(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음)

2.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원 전원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함.

□ 소득·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p>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2순위 일반입주자) <p>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u>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u>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u>1명 10%p, 2명 이상 20%p</u> ※ 출생자녀는 기준일('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p>3.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p>1. 자산기준 적용 신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2순위 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p>2. 총자산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p>3. 자동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p>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생략가능.

1.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 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37,000,000	45,630,000
	2인	0인	60%	237,000,000	45,630,000
		1인	70%	261,000,000	50,200,000
	3인 이상	0인	50%	237,000,000	45,630,000
		1인	60%	261,000,000	50,200,000
		2인 이상	70%	285,000,000	54,760,000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인	0인	90%	237,000,000	45,630,000
	2인	0인	80%	237,000,000	45,630,000
		1인	90%	261,000,000	50,200,000
	3인 이상	0인	70%	237,000,000	45,630,000
		1인	80%	261,000,000	50,200,000
		2인 이상	90%	285,000,000	54,760,000
타. 장애인(2순위)	1인	0인	120%	237,000,000	45,630,000
	2인	0인	110%	237,000,000	45,630,000
		1인	120%	261,000,000	50,200,000
	3인 이상	0인	100%	237,000,000	45,630,000
		1인	110%	261,000,000	50,200,000
		2인 이상	120%	285,000,000	54,760,000

2.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99,082	2,158,898	2,518,715	2,878,531	3,238,348	3,598,164	3,957,980	4,317,797
2인	2,738,502	3,286,202	3,833,902	4,381,602	4,929,303	5,477,003	6,024,703	6,572,404
3인	3,813,487	4,576,184	5,338,881	6,101,578	6,864,276	7,626,973	8,389,670	9,152,368
4인	4,289,044	5,146,853	6,004,662	6,862,470	7,720,279	8,578,088	9,435,897	10,293,706
5인	4,515,524	5,418,629	6,321,734	7,224,838	8,127,943	9,031,048	9,934,153	10,837,258
6인	4,866,543	5,839,851	6,813,160	7,786,468	8,759,777	9,733,086	10,706,394	11,679,703
7인	5,217,562	6,261,074	7,304,587	8,348,099	9,391,612	10,435,124	11,478,636	12,522,149
8인	5,568,581	6,682,297	7,796,013	8,909,730	10,023,446	11,137,162	12,250,878	13,364,594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원, 자동차가액 50,200,000원을 적용함

3.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임.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면적 × 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금융자산 조회 안내

- 입주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 불가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4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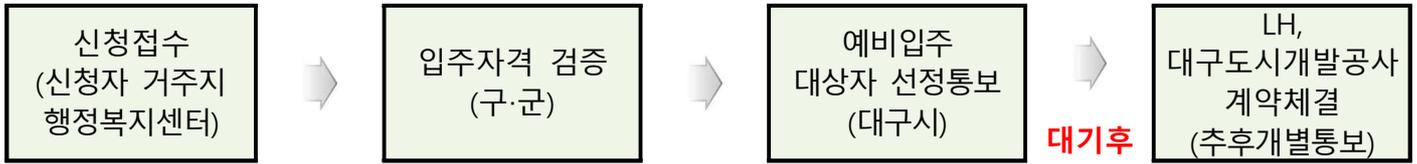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점수 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인 연령 높은 자

□ 선정기준표

구 분		배 점	비 고
		100점	
1. 가구원 수 (30점)	5명 이상	30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명	27점	
	3명	24점	
	2명	21점	
	1명	18점	
2. 신청인 연령 (20점)	60세 이상	16점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50세 이상~60세 미만	18점	
	40세 이상~50세 미만	20점	
	30세 이상~40세 미만	18점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8점	
	3년 이상~5년 미만	16점	
	3년 미만	14점	
4.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배점 중 1가지만 적용	유형3가지	20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가지	18점	
	유형1가지	16점	
	기타유형	12점	
10점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8점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기 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점	▶ 미성년자녀 3명이상 부양자 ▶ 철거주택 거주자 및 이에 준하는 주거퇴거 위기 가구

5

선정 절차



6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 2년, 입주(재계약) 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국토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및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거 **입주자 자격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함**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입주자 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 별도)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7

참고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6. 1. 19.)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함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계약안내

- 계약 안내는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사업주체(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기선정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배정되며,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됨.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내년에 선정될 예비입주자에 우선함.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
-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입주자 선정,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함.**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전 모집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금번 모집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탈락**처리됨
- 신청 이후 취소나 정정 불가하며,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선정 결과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콜센터, 대구도시개발공사 콜센터

단지명		전화번호
LH	월성2	053)635-0822
	월성3	053)633-8858
	본동	053)641-7551
	성서1	053)581-7150
	성서3	053)582-4088
	산격	053)381-3586
	황금3	053)764-6602
	안심1	053)964-4548
	안심3	053)964-5717
	옥포2	1600-1004(LH콜센터)
대구도시개발공사	콜센터	053)350-0301~3

2026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